

## 삼저시대

요즈음 삼저시대(三低時代)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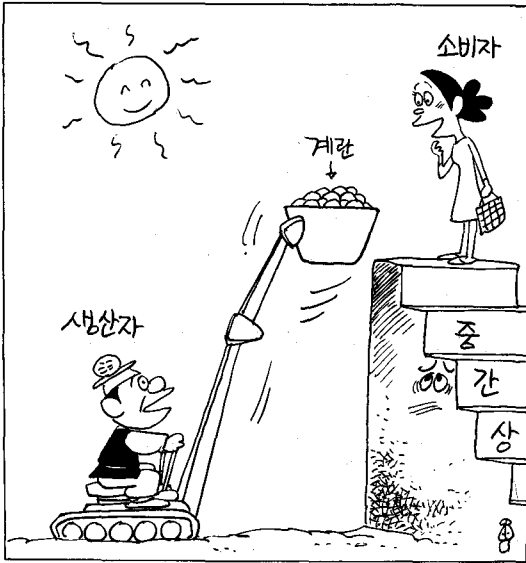
일본의 엔화(円高)가격이 높아져 상대 적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하고 기름값이 폭락하고 국제 금리가 하락하는 것을 말하는데 삼저가 국내경기를 크게 활성화하여 수출이 늘어나고 외채를 갚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부풀어 있다. 이러한 기회는 좀처럼 오기 힘든 것인데 행운의 여신이 한국에 손짓하여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 주려는 모양이다. 그러나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 우리가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황제가 될 운명을 타고 낚어도 노력이 없으면 그저 집안에서만 부인을 황후라 부르고 자식을 황태자라고 부를뿐이다. 양계업계에

도 삼저시대가 와 야단들이다. 계란값이 생산비 이하로 맴돌고, 닭고기 가격도 장기간 생산비 이하로 유지하고 있으며 생산성과 소비량도 낮아져 양계업계도 삼저(三低)시대가 장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여진다.

삼저시대가 계속되면 불필요한 군살을 제거하는 약간의 효과야 있을지 모르지만 생산자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벌써 도산하는 업체가 생기고 있어 오래 계속될 경우 사료업체 등 관련 업계에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채란업계 일부에서는 삼저시대를 맞아 발전의 계기로 삼으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계란값 하락시에는 오래 상인들의 횡포가 심하게 마련인데, 차제에 생산자들이 직접 유통에 참여하여 일대 혁신을 가하려는 움직임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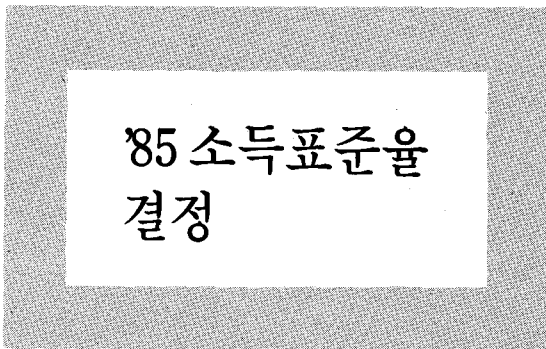
생산자들이 뭉쳐 유통회사를 만들고 G.P 센터를 만들고 상품의 품질을 높이고 공판장을 만들어 생산에서 소비의 복잡한 과정을 단순화 시키려는 움직임들과 협회를 중심으로한 소비홍보운동이 3월 한달 특히 활발하였었다. 이 운동이 계속되어 양계산업의 양적 발전에서 질적 발전으로 이어지게 되어 삼저시대의 어려움을 발전의 계기로 전환하는 양계인의 지혜와 의지를 보여준



다면 양계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는 대규모 양계장 시설확장 등이 이루어져 양계인들의 단합을 해치고 있는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며 규모의 확장은 시기를 보아가며 조절하는 것이 현명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일들이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업계의 분위기를 몰라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도 모든 양계인이 참여와 대화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85년도 사업분에 대한 소득표준율이 결정되었다.

양계업의 경우 지난해 10%에서 9%로, 1% 하향조정 되었다. (기본율 기준) 소득표준율이란 기장을 하지않는 업체에 대해서 국세청이 그해의 업종별 소득을 조사하여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세율이라고 보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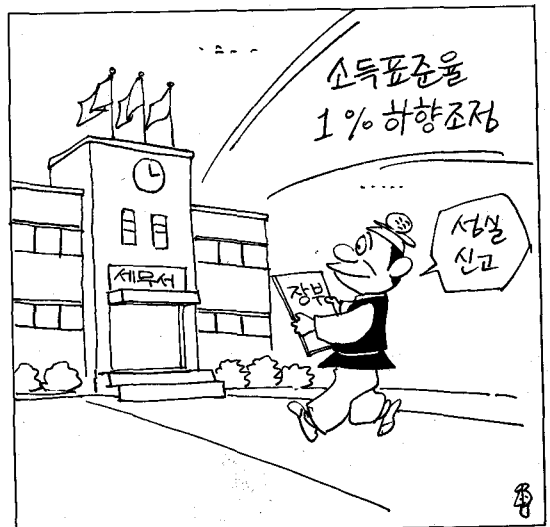
따라서 소득표준율을 제2의 세율이라고도 부른다. 정부입장에서는 추계과세를(인정과세) 지양하고 기장에 의한 실사를 통한 과세를 유도하기 때문에 추계과세를 당하는 쪽이 불리한 것만은 확실하다.

그러나 양계산업의 경우에 아직도 유통단계가 전근대적 이어서 정확한 영수증 주고 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므로 양축가들은 자연 소득표준율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85년도에 양계를 하였으면 총 외형액의(계란, 닭고기 등 판매 총액) 9%가 순소득으로 이 소득액에서 기초공제를 한후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된다.

또 기장을 하는 경우라도 소득표준율 자체가 높으면 그 이하로 소득이 산정되어도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소득표준율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양계업에 대한 소득표준율의 현실화와 기장을 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 추계과세를 하지 않도록 되기를 바란다.



축산업 소득표준율

| 코드번호   | 종분류 |        | 목적분류          | 적용범위 및 기준  | 최저율<br>(비율)    | 인하율<br>(이상) (비율)      | 기본율<br>(이상) (비율)      | 최고율<br>(이상)     |
|--------|-----|--------|---------------|--|----------------|-----------------------|-----------------------|-----------------|
|        | 세분류 | 목      |               |  |                |                       |                       |                 |
| 111210 | 축산업 | 농업     | 축산업           | ○낙농품 생산을 위해 젖소, 젖양을 기르는업 (직접 생산한 젖을 싼급하고 병에 넣어 시판하는 경우 포함)   | 17,000<br>6.3  | 17,000-19,000<br>7.1  | 19,000-126,000<br>8.0 | 173,000<br>10.9 |
| 111220 |     | 축산업    | 육우사육          | ○쇠고기 생산을 위해 소를 사육하는업   | 전수입금액<br>0.0   |                       |                       |                 |
| 111230 |     | 축산업    | 돈             |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돼지를 사육하는업 (고기 생산을 위한 멧돼지 사육포함)  | 15,500<br>7.4  | 15,500-17,000<br>8.2  | 17,000-112,000<br>9.0 | 153,000<br>12.2 |
| 111241 |     | 축산업    | 슴             |  | 9,000<br>11.6  | 9,000-10,000<br>13.0  | 10,000-69,000<br>14.5 | 95,000<br>19.9  |
| 111249 |     | 축산업    | 기타가축          | ○고기, 모피, 털등을 생산하기 위한 기타 가축의 사육 (애완용을 제외한 개전문사육 포함)<br>*가구나 특정사업체의 산업활동용 또는 애완용 가축육(→111290)                                | 10,800<br>10.0 | 10,800-12,000<br>11.2 | 12,000-80,000<br>12.5 | 110,000<br>17.1 |
| 111251 |     | 축산업    | 양계            |  | 15,500<br>7.4  | 15,500-17,000<br>8.2  | 17,000-112,000<br>9.0 | 153,000<br>12.2 |
| 111259 |     | 축산업    | 타가축           | ○고기, 알등의 생산을 위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등 각종 조류사육업<br>*판매목적의 관상용, 애완용 조류 사육(→111290)  | 10,800<br>10.0 | 10,800-12,000<br>11.2 | 12,000-80,000<br>12.5 | 110,000<br>17.1 |
| 111260 |     | 축산업    | 양봉            | ○꿀을 생산하기 위하여 꿀벌을 치는업   | 7,500<br>14.3  | 7,500-8,300<br>16.1   | 8,300-56,000<br>18.0  | 77,000<br>24.7  |
| 111290 |     | 축산업    | 기타축산업         | ○판매목적의 종축, 품종사육장, 애완용 및 관상용 조류류사육장, 실험용 동물사육장, 뱀, 곤충, 지렁이 등의 육지동물 사육 및 양식하는업<br>*식용계류 양식(→130210)                          | 10,800<br>10.0 | 10,800-12,000<br>11.2 | 12,000-80,000<br>12.5 | 110,000<br>17.1 |
| 112211 | 축산업 | 서비스업   | 기금부화업 (허가사업)  | ○축산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 부화업 허가를 받은자가 수행하는 자금부화업<br>(자금사육활동과 연관되지 않고 자기계정으로 가금을 부화하여 일반 및 자금사육업체에 판매하는 경우포함)<br>*식용계류 양식(→130210) | 10,800<br>10.0 | 10,800-12,000<br>11.2 | 12,000-80,000<br>12.5 | 110,000<br>17.1 |
| 112212 |     | 축산업    | 기금부화업 (무허가사업) | ○부화업허가가 없는 자의 자금부화수입   | 7,100<br>15.1  | 7,100-7,900<br>17.0   | 7,900-53,000<br>19.0  | 73,000<br>26.1  |
| 112290 |     | 축산업    | 타가축서비스        | ○양털깎기, 품종개량, 동물인공수정, 거세, 병아리감별 등   | 10,800<br>10.0 | 10,800-12,000<br>11.2 | 12,000-80,000<br>12.5 | 110,000<br>17.1 |
| 312290 |     | 기타서비스업 | 기타서비스업        | ○제란가공품, 분말젤스, 조제건강식품, 식탁크림, 제리, 유아식품, 음료용 및 디저트용 분말식품  | 11,500<br>9.2  | 11,500-13,000<br>10.6 | 13,000-84,000<br>12.0 | 115,000<br>16.4 |
| 312300 |     | 기타서비스업 | 서비스업          | ○배합사료, 보조사료, 사료제조용제품, 어분, 애원동물 및 물고기 양식용 사료 (단미사료)   | 29,500<br>3.5  | 29,500-33,000<br>4.0  | 33,000-226,000<br>4.5 | 307,000<br>6.1  |